



건설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Q & A

Q1 철거현장에서 배출된 폐스레트의 처리방법?

A1 건축물 해체시 발생한 석면이 함유된 폐스레트를 파쇄되지 않은 상태로 철거할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하며 철거과정에서 파쇄되어 비산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됨.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함께 발생한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와 지정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모두 받아야 함.

또한 스판트의 해체 및 제거과정에 사용된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장갑 등에 석면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하며, 석면이 묻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소각처리후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음.

Q2 신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 발급기관?

A2 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허가기관·발주기관 등 행정기관이나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기술적용시설의 설치를 인정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는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Q3 건설공사의 지반보강용으로 사용한 슬라임의 경우 폐기물 종류와 처리방법은?

A3 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나 슬라임을 굽착할 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하여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에서 정하는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1%이하) 및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복토용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해당되는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음. 또한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

우에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의2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Q4 철거공사시 발생된 석면이 함유된 폐스레트의 경우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방법은?

A4 공사 또는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고형화되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폐석면 및 폐스레트가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되며,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여야 함. 단, 비산우려가 있는 성상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처리하여야 함.

Q5 폐콘크리트라 함은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를 말하는데 금속류가 혼합되어 있는 콘크리트파일의 성상은?

A5 건설폐재류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종류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기와, 폐벽돌, 폐블럭 및 건설폐토석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로서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발생당시 두 가지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경우라면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면 되나, 폐콘크리트에 철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철근을 분류하여 폐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별도 배출하고 있음.

Q6 시멘트 포장이 된 기존 도로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멘트 포장된 도로 일부는 제거를 하고 일부는 바로 흙으로 복토를 하여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처리방법은?

A6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도로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폐기물의 성상이나 종류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처리하여야 함.

Q7 건설공사 세륜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처리방법 및 재활용 가능여부?

A7 건설공사현장에서 세륜기에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 오니에 해당되므로 함수율 85% 이하로 탈수·건조하여 매립 처리하여야 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재활용이 가능할 것임.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46조 별표11의2의 규정에 따라 성토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폐기물재활용신고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45호, 2004.9.16호)」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재활용대상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음.

Q8 본 현장에서는 사업장내에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파쇄시설)을 설치·신고후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폐목을 파쇄후 수목가식장의 피복용, 축사 바닥깔개 등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이 경우 시행규칙46조 3항에 의거(별표 11의2) 재활용신고대상 폐

목재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폐목재로 숯·활성탄·톱밥 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에 규정된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이 재활용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규칙 46조3항은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자에게 해당하는 규정이 아닌지요? 스스로 처리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후 신고내용에 따라 적절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2차적인 환경오염(침출수발생, 유출 등) 등을 유발하지 않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A8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인 폐목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11 의2 제4의9호의 규정에 의거 우드칩을 생산하여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공장에 공급할 수 있으나 질의한 바와 같이 수목가식장의 피복용, 축사 바닥깔개 등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3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연료용으로 사용은 가능함.

Q9 슬라임이 지증(땅속)에서 지표면으로 올라올 때 토사와 시멘트 일부가 이미 혼합되어 있으므로 분리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처리 방법을 결정 방법은?

A9 슬라임을 굴착할 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하여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제로 배출되는 슬라임의 형상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Q10

연약지반 지반보강공사(교반공법 - Deep Cement Mixing) 시 발생되는 슬라임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토용으로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 및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사시방서 기준에 적합하게 일반토사와 혼합하여 구조물 되메움재 또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유수면매립공사 인, 허가를 득한 공사현장의 성토재로 사용 가능 여부?

A10 건설공사장의 지반보강용 등으로 사용한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라목(2)의 규정에 의거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 건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받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슬라임을 굴착할 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하여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중간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임.

Q11

건축 폐기물 중 콘크리트(파쇄) 골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예) 도로공사중 지반층에만 사용 가능 문) 일반도로(비포장 흙길)에도 사용 가능여부 문) 임야내 공사용도로(한시적)에도 사용 할수있는지요 모군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콘크리트 폐기물이었지만 골재화 되었으므로 사용 가능 유권해석함(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 지목은 임. 무허가 공사용 장비 출입도로는 80년도부터 가끔 사용 현재도 사용중)

A11 건설폐재류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중간 처리기준(최대지름 100mm이하, 유기이물질 함유량 부피기준 1% 이하)에 적합하게 처리한 순환골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되는 순환골재는 각 용도별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Q12 소각전문 중간처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건물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등)을 자가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 소각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상기 폐기물을 지정외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엑자를 득한 수집운반업자에게서 위탁받을시 적법여부.

A12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8호바목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폐기물수집·운반증(임시차량)을 발급받아 운반할 수 있음.) 아울러, 건설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폐기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며, 건설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를 수집·운반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폐기물배출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므로 사업장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할 수 없음.

Q13 폐콘크리트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1994년 당시 본인소유의 토지에 약 6미터 높이의 옹벽이 설치하면서 지반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건설폐기물)를 성토재로 사용하였습니다. 94년 당시 옹벽공사에서 폐콘크리트를 성토재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

인 현상이었고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규정이 특별히 없었고 폐콘크리트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도 없었고 비위생매립장에서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재활용을 위한 파쇄기 등에 대한 규정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현시점에서 94년 당시에 옹벽공사에 이용된 폐콘크리트가 불법 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본인은 폐콘크리트를 처리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고 처리업체 또한 없었던 시절에 옹벽공사에 적정하게 재활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4년 당시 옹벽공사에 성토재로 이용한 폐콘크리트가 불법 매립하였다고 규정할 수 있는지요?

A13 94년 당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일반폐기물에 해당되는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를 스스로 또는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은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환경처·건설부고시 제1994-1호, 94.1.7)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재의 재활용 용도 및 용도별 규격·지침에 적합하게 재활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의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임의대로 매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음.

당시의 법규정에 대하여는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의 연혁 법령정보를 참고하기 바람. 아울러,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었으나, 현재 법령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다시 회수 및 처리토록 명령할 수는 없으나,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경우라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경우 불법매립을 한 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 조치명령이 가능할 것임.